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임규호 의원 발의)

의안 번호	3024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8월 11일
발 의 자: 임규호 의원(1명)
찬 성 자: 김길영, 박승진, 박철성,
서준오, 왕정순, 윤종복,
이영실, 이원형, 정준호
의원(9명)

1. 제안이유

-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7조에 따른 지역균형발전계획의 실효성 있는 이행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하여 2019년부터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운용 중에 있음.
- 동 특별회계는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 74조 이하에 따른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사업 및 서울특별시 균형발전 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위하여 지속 운용할 필요가 인정되므로,
- 균형발전사업의 연속성과 재정지원체계의 안정적 유지를 위하여, 금년 12월 31일 기한 만료 예정인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연장하고자 동 조례의 일부개정안을 발의함.

2. 주요내용

- 가.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30년 12월 31일로 연장함(안 제 14조)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지방재정법 제9조

서울특별시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한다..	제14조(특별회계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30년 12월 31일로 한다..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14조(특별회계 존속기한)의 내용을 수정하여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에서 2030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과

재정분석과장 이 선 희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김 진 형

☎ 02-2180-7954

e-mail : kjh0816@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